

『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조국근대화의 상징이자 우리시 대표 명소인 박정희대통령 생가와 그 주변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와 민간위탁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개관·휴관, 관람시간,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장)
- 민간위탁 및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장)
-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 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 -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

박정희대통령 생가와 민족중흥관 등 주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랑스러운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및 “생가 등 주변시설물”의 정의, 관리 및 운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제2장에서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개관 및 휴관일, 관람시간, 관람료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제3장에서는 생가 등 주변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,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,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제4장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직무에 관한 사항을 두어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, 예산 및 인원배치에 관한 사항,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
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, 안 제9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거 “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”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